

가구의 금융부채 보유 유형별 부채상환능력 분석*

전승훈** · 임병인***

금융부채 보유 상태 및 부채상환능력을 기준으로 가구를 부채미보유가구, 부채 위험경험가구, 부채위험미경험가구 등으로 구분한 후 각 유형별로 가구특성과 부채특성을 분석한 결과 고령자가구, 여성가구주자가구, 자영자가구 등이 부채위험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취약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의 부채위험은 부동산 자산의 증가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2010~2011년 기간 중 위험지표를 통해 측정된 부채상환능력이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채상환능력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역시 비관적으로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선택 Probit 모형 추정을 통해 가구의 부채위험과 주관적 부채상환능력 평가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부채위험가구가 자신의 부채상환능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해 향후 부채위험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주제어: 가계부채, 부채위험, 부채상환능력, 가계금융조사, 부채유형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D1, E2, R2

I. 문제제기

2012년 6월 말 현재 가계부채 규모는 약 922조 원에 달해 2002년 472.6조 원에 비해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생애주기 항상소득가설(life-cycle permanent income hypothesis)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기간 간 예산 제약 하에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이다. 개인은 기간 간 예산 제약 하의 효용극대화를 위해 자원을 적절하게 배분하며, 이 과정에서 차입 혹은 저축을 통해 생애 소비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게 된다. 그러나 가계의 차입

* 이 논문은 2012년도 예금보험공사 외부 연구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연구임을 밝힙니다.

** 제1저자, 대구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전화: (053) 850-6214, E-mail: jsh1105@daegu.ac.kr

*** 교신저자,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전화: (043) 261-2216, E-mail: billforest@hanmail.net

논문투고일: 2012. 11. 26 수정일: 2012. 12. 10 게재확정일: 2012. 12. 13

행위는 미래소득에 대한 기대에 근거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래소득의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차입이 자칫 상환위험에 직면한 가능성을 항상 존재하게 만든다(성영애, 2006).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수준은 국민소득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등 과도한 수준이라고 평가되고 있다.¹⁾ 과도한 가계부채는 이자 및 원금상환 부담과 함께 가계의 소비패턴에 악영향을 주게 되며 가용자금의 감소를 초래하여 가계저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김학주, 2005). 또한 신용불량, 가계파산 등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하고, 국가경제 차원에서 가계부채발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²⁾

가계부채의 심각성에 대해 논의할 때, 주로 언급되는 것은 총부채규모 또는 가처분소득 총액 대비 가계부채 비중, 그리고 가계부채 증가속도 등 거시적인 지표이다. 그러나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가계의 부채보유 실태, 부채보유 상태 변화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전승훈·임병인, 2012). 특히, 부채상환위험에 직면해 있는 가구의 특성 및 부채상환위험에 직면하는 이유에 대한 분석, 그리고 부채상환능력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성영애·양세정(1995), 김정호(2004), 성영애(2006, 2010), 양세정(2000), 김학주(2004, 2005), 전승훈·임병인(2008, 2012), 김현정·김우영·김기호(2009), 김우영·김현정(2010), 함준호·김정인·이영숙(2010), 신창목(2010), 신동진(2010), 홍종학(2011), 이규복(2012), 최공필(2012), 김건우·이창선(2012) 등 다양한 연구자에 의해 가계의 부채 및 부채상환위험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 바 있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1990년 이후 최근까지 가구의 부채부담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가구의 부채부담은 연령, 성별 등 가구주의 특성과 소득 수준, 자산보유 등 경제 상태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특히 최근 들어 자영업자의 부채 상태가 상대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연구 중

1) 2002~2010년 기간 중 명목GDP는 연평균 6.3%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중 가계부채 규모는 연평균 8.8% 증가하였다. 2002~2011년 기간 중 가계부채의 연평균 증가율은 7.8%이다.

2) 이에 정부는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2011. 4. 15),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2011. 6. 29),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2012. 2. 27) 등 다양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들 정책은 ① 시중유동성 안정적 관리, 주택시장 안정기조 지속, 투자활성화 등을 통한 자금의 생산적인 흐름 유도, ②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충 등을 통한 가계의 상환능력 제고, ③ 금융회사의 과도한 대출증가 요인 차단, 신중한 가계대출 관행유도, 대출구조 개선, 소비자에 대한 보호장치 강화 등 금융부문의 정책 대응을 강화, ④ 가계부채 조정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서민금융 대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홍종학(2011)은 가계대출 증가의 원인을 가계의 만성화된 적자와 자본 조달비용도 충당하지 못하는 자본수익률 등 수요측 요인과 가계부실을 유발하는 약탈적 대출이라는 공급측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때 약탈적 대출이란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대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택담보대출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원리금 상환액이 월소득액의 1/3을 넘을 때 약탈적 대출의 의도가 있다고 간주하고 있다.³⁾ 김건우·이창선(2012)은 가계의 원금상환능력, 이자지급 부담, 지급 여력, 소득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가계부실지수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높은 부동산 가격, 포화 상태의 자영업, 고질적인 적자가구 등으로 축적된 위험이 해소되지 못하고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공필(2012)은 2005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여온 가계부채가 이제 자산가치 하락을 촉발할 수 있는 불안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가구 유형별 분석을 시도한다. 기존 연구의 경우, 주로 부채보유가구의 특징 혹은 부채증가의 원인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부채보유가구 중에서도 실제 부채상환위험에 직면해 있는 가구와 부채상환위험 없이 단순하게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특성 및 부채보유 이유 등에는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 가구를 구분하여 부채위험가구의 특성 및 부채보유 이유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금융부채 보유 상태 및 부채상환능력을 기준으로 가구를 금융부채를 보유하지 않은 부채미보유가구,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 중 부채상환위험에 직면해 있는 부채위험경험가구, 그리고 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나 부채상환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부채위험미경험가구 등으로 구분한 후 각 유형별로 가구특성, 부채특성, 그리고 부채상환능력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본 연구는 가구가 주관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부채상환능력과 실제 부채위험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가구 부채상환능력에 대한 주관적 판단의 정확성은 가계부채 증가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를 들어, 가구가 자신의 부채상환능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면 부채상환능력을 넘어서는 부채의 증가는

3) 홍종학(2011)은 약탈적 대출의 형태로 소득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담보대출(asset-backed lending), 반복적 차환대출을 통해 수수료 수익을 올리는 대출(loan flipping), 이자만 상환하는 대출(balloon payments), 이자를 일부만 상환해 원금이 늘어나는 대출(negative amortization), 만기 전 상환에 대해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대출(prepayment penalties) 등을 들고 있다.

크게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부채상환능력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계부채위험과 관련된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 가구가 주관적으로 파악하는 부채상환 가능성에 대한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구의 주관적인 부채상환능력과 객관적인 지표로 파악되는 가구의 부채상환능력의 비교를 통해 부채위험에 대한 각 가구의 주관적인 평가가 얼마나 정확한가를 분석한 후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I절 문제제기에 이어, 제II절에서는 부채보유 경험 및 부채상환능력을 기준으로 가계의 유형을 구분한다. 이를 위해 기존 연구의 논의 검토를 통해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를 제시한다. 제III절에서는 각 가구 유형별로 가구특성, 부채특성을 비교한 후 다항로지 분석을 통해 부채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제IV절에서는 각 유형별로 주·객관적 부채상환능력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V절에서는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시사점을 제시한다.

II. 사용자료와 부채상환능력에 따른 가구 유형 분류

1. 자 료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가계금융조사」 2010년과 2011년 자료이다. 「가계금융조사」는 경제·사회복지정책이나 학문연구 활동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가계자산보유 실태에 초점을 맞추어 생성된 가계조사 자료로 본 연구 목적에 적합한 자료이다. 「가계금융조사」는 2006년에 처음 발표된 「가계자산조사」와 금융감독원의 「가계신용조사」, 한국은행의 「한은패널조사」를 통합한 자료로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일반조사구와 총조사 이후 신축된 아파트를 모집단으로 하고 있으며, 1년을 주기로 약 10,000가구를 표본조사하고 있다. 2010년 자료의 경우 2010년 2월을 기준으로 자산 및 부채 현황과 2009년 1년간의 소득 및 지출 현황이 조사되었으며, 2011년 자료의 경우 2011년 2월 기준으로 자산 및 부채 현황과 2010년 1년간의 소득 및 지출 현황이 조사되었다.

한편, 「가계금융조사」는 패널자료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0년과 2011년 모두 조사에 응한 가구의 자료를 사용하여 동일한 가구를 대상으로 부채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부채상환능력의 변화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가계금융조사」 자료 중 2010년의 가구 패널키와 2011년 가구번호를 연결한 후, 가구의 연령 및 성별 등을 비교하여 가구주 변동이 없는 가구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는 부채 상태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가구를 기준으로 2010년과 2011년의 부채 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2010년과 2011년의 자료를 연결하여 구축한 관측치는 7,562가구이다.

2. 부채상환능력 지표

본 연구에서는 가구의 부채보유 여부 및 부채위험 여부를 기준으로 가구 유형을 구분한다. 이때 부채위험⁴⁾ 여부는 가구의 부채상환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런데 함준호·김정인·이영숙(2010)이 지적한 바와 같이 부채위험가구 여부를 판단하는 부채상환능력 지표를 객관적으로 정의하거나, 사용한 부채상환능력 지표값 중 부채위험가구 여부를 판단하는 임계값(critical value)을 객관적으로 정의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구의 부채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지표 및 임계값과 관련한 기존 연구를 다양하게 검토한 후 기존 연구자들 사이에 일정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기준을 사용하였다.

「가구소비실태조사」, 「가계자산조사」, 「가계금융조사」 등을 이용하여 2000년 이후 가계의 부채부담 및 부채상환능력을 분석한 전승훈·임병인(2008, 2012)에서는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금융부채액의 경상소득 대비 비중, 금융부채액의 총자산 대비 비중, 그리고 금융부채액의 저축액 대비 비중 등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는 부채상환능력 지표는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기준으로 부채위험가구를 구분하고 있지는 않다.

한편, 2000~2007년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가계의 재무건전성 지표 추이, 거시환경 변화에 대한 가계채무 부담의 민감도, 가계부채 및 부채상환 부담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한 김현정·김우영·김기호(2009)는 소득 대비 부채비율(Debt to Income, 이하 DTI), 금융자산 대비 부채비율(Debt to Asset, 이하 DTA1), 총자산 대비 부채비율(DTA2) 등을 이용하여 몇 가지 부실 위험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부채가구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DTI)과 관련

4)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부채위험가구는 부채상환능력이 떨어지는 가구, 가계부채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가구 등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해서는 부채가 소득의 3배 이상(DTI 3배 이상)인 가구, 소득 대비 고부채가구(DTI 3배 이상)이면서 동시에 적자인 가구 등을 부실위험가구로 정의하고 있다. 금융자산 대비 부채비율(DTA1) 추이와 관련해서는 금융자산보다 부채가 5배 이상 많은(DTA1 5배 이상) 가구를 금융자산 대비 고부채가구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금융자산 대비 고부채가구(DTA1 5배 이상)이면서 동시에 적자인 가구를 부실위험가구로 정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총자산 대비 부채비율(DTA2) 추이를 분석하면서는 총자산보다 부채가 0.7배 이상 많은(DTA2 0.7배 이상) 가구를 금융자산 대비 고부채가구로, 금융자산 대비 고부채가구(DTA2 0.7배 이상)이면서 동시에 적자인 가구를 부실위험가구로 정의하고 있다.

함준호·김정인·이영숙(2010)은 2,210만 명의 개인신용 전수자료를 이용하여 차주별 특성 및 금융업권별로 부채상환능력을 비교·분석하고 거시경제 충격에 따른 금융권역별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불량률의 변화, 차환위험 분석 등을 통해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분석하였다. 함준호·김정인·이영숙(2010)은 소득 대비 부채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DTI(부채-소득배율)의 위험기준을 객관적으로 정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다소 임의적인 기준인 우리나라 투기지역 DTI 상한기준인 40% 이상을 위험군으로 분류하였다. 함준호·김정인·이영숙(2010)은 부채-소득배율을 소득분위, 직업, 지역, 신용등급, 연령, 금융권업 등 6개 특성별로 분석하고 있으며, 부채차주를 기준으로 연체차주의 비중을 불량률로 정의하고, 2008년 8월을 기준 시점으로 이후 12개월 이내 90일 이상 연체기록이 한 번 이상 있는 고객을 연체차주로 간주하여 불량률을 계산하였다.

신창목(2010)은 가계부채 부실화 위험을 개인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로 간주한 뒤, 이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채무상환 비중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신동진(2010)은 가계부채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국제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때 금융자산/금융부채, 금융부채/개인순처분소득, 이자지급, 개인순처분소득, 금융부채 증가율, 명목 GDP 대비 개인부문의 금융부채 비율, 개인순처분가능소득 대비 개인부문의 금융자산 비율 등의 지표를 이용하여 가계부채 현황 및 특징, 위험의 정도 등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가계대출의 연체율이 정부의 저금리 정책으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분석하고 가계부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홍중학(2011)은 원리금 상환액이 월소득액의 1/3을 넘을 때 약탈적 대출의 의도가 있으며, 이는 공급 측면에서 가계대출의 부실을 유발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계금융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자영업자의 부채 문제를 분석한 이규복(2012)은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중의 비교를 통해 자영업자의 부채비중이 159.2%로 상용근로자의 83.4%에 비해 2배 정도 높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리고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의 비중이 40%가 넘는 차입자를 부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였다.

최공필(2012)은 고부채가구 중 가처분소득에서 생활비와 원리금 상환액을 차감한 가계잉여가 음(-)인 가구를 취약가구로 규정하고 있다.

김건우·이창선(2012)은 가계의 원금상환능력, 이자지급 부담, 지급 여력, 소득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가계부실지수를 측정하고 있다. 이때 소득 여건은 실업률, 지급 여력은 흑자율(=(소득-소비지출)/가처분소득), 이자부담 수준은 이자상환비율(=이자비용/가처분소득), 원금상환능력은 부채자산비율(=개인금융부채/개인금융자산) 등이 사용되고 있다.⁵⁾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기존 연구에서 주로 사용된 부채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소득 대비 이자 및 원리금 상환비율, 소득 대비 부채비율(DTI), 자산 대비 부채비율(DTA), 적자가구 여부 등이 있으며, 대략 이자 및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 대비 30~40% 수준인 경우, 부채비율이 소득 대비 300%인 경우, 부채비율이 자산 대비 100~500% 이상인 경우 등을 부채상환능력이 부족한 부채위험가구로 정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을 기초로 <표 1>과 같은 기준을 사용하기로 한다.

우선 부채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이자 및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 대비 비중, 부채액의 소득 대비 비중, 적자가구 여부, 부채액의 자산 대비 비중 등을 사용하였다. 소득은 경상소득이 사용되었으며, 부채액은 가구의 금융부채액을 사용하였다. 금융부채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가계부채를 구성하는 항목 중 비금융부채인 임대보증금은 부동산 자산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부채상환 위험이 금융부채에 비해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전승훈·임병인, 2012). 또한 자산액은 총저축액을 사용하였다. 이유는 부동산 자산이 주거 목적인 경우

5) 이 밖에도 일부 언론(조선일보, 2012. 8. 3)에서 빚을 갚기 어려운 한계가구를 소득의 40% 이상을 빚을 갚는 데 쓰고 자산보다 빚이 많은 가구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 다른 용어로 ‘하우스-푸어(house-poor)’라는 용어가 있는데, 현대경제연구원은 “대출을 받아 주택 1채를 매입했고 가처분 소득 대비 원리금 비중이 10% 이상이면서 빚 상환부담 탓에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정의한다. 하우스-푸어를 원리금 상환액이 가처분소득의 30%를 넘는 가구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표 1〉 부채상환능력 측정지표 및 부채위험가구 판별 기준

부채상환능력지표	부채상환능력 위험 판단 기준	부채위험지표
이자 원리금상환액 기준	이자 및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 대비 40% 이상	위험지표 1
DTI 기준	경상소득 대비 300% 이상	위험지표 2
적자가구	소비지출이 소득보다 많은 경우	위험지표 3
DTA 기준	총저축액 대비 100% 이상	위험지표 4

부채상환 용도로 활용되기 어려우며, 또한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금융부채 상환시기에 부채상환 용도로 활용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즉,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으로 금융부채를 상환할 수 없다면 부채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리고 이들 기준을 조합하여 다음과 같은 부채위험지표를 설정하였다. ‘위험지표 1’에서는 이자 및 원금상환액이 소득 대비 40% 이상인 경우를 부채위험가구로 정의하였다. ‘위험지표 2’에서는 ‘위험지표 1’ 기준 부채위험가구이면서 경상소득 대비 금융부채의 비중(DTI)이 300% 이상인 경우를 부채위험가구로 정의하였다. ‘위험지표 3’은 ‘위험지표 2’ 기준 부채위험가구이면서 소비지출이 소득보다 많은 적자가구인 경우를 부채위험가구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위험지표 4’에서는 ‘위험지표 3’ 기준 부채위험가구이면서 총저축액 대비 금융부채의 비중(DTA)이 100% 이상인 경우를 부채위험가구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기준 중 부채위험에 대한 가장 강한 기준인 ‘위험지표 4’와 가장 약한 기준인 ‘위험지표 1’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3. 부채상환능력에 따른 가구 유형의 분류

본 연구에서는 부채위험지표를 기준으로 각각의 가구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우선 2010~2011년 기간 중 부채를 보유하지 않은 가구는 ‘부채미보유가구’로 분류하였다. 그런데 2010~2011년 중 한 해에만 부채를 보유하지 않은 가구는 일시적으로 부채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부채미보유가구’에서 제외하여 ‘부채보유가구’로 분류하였다. 당연히 ‘부채미보유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는 ‘부채보유가구’이다. 이들 ‘부채보유가구’ 중 2010~2011년 기간 중 한 번이라도 부채위험을 경험한 가구는 ‘부채위험경험가구’로, 한 번도 부채위험을 경험하지 않은 가구는 ‘부채위험미경험가구’로 구분하였다.

〈표 2〉 가구 유형의 분류

		가구 수	
		위험지표 4	위험지표 1
부채미보유		2,558(33.8%)	
부채위험 경험	부채위험경험가구	185(2.4%)	979(12.9%)
	부채위험미경험가구	4,819(63.7%)	4,025(53.2%)

이와 같이 구분한 것은 한 번이라도 부채위험을 경험한 가구는 일시적으로 부채위험에서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부채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기 때문이다.⁶⁾

이상의 기준으로 구분할 때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 중 부채미보유가구는 총 2,558가구(33.8%)이다. 그리고 위험지표 4 기준 부채위험경험가구는 185가구(2.4%)이며, 위험지표 1 기준 부채위험가구는 979가구(12.9%)이다.

Ⅲ. 가구 유형별 특성 분석

1. 유형별 가구특성

〈표 3〉은 유형별로 가구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가구주의 연령은 부채보유 경험이 없는 가구가 부채보유 경험이 있는 가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기준 부채미보유가구 가구주의 평균연령은 58.2세로 위험지표 4 기준 위험경험가구의 50.3세와 미경험가구의 47.3세, 위험지표 1 기준 위험경험가구의 46.6세, 미경험가구의 47.6세보다 많았다. 부채미보유가구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생애주기가설에서 제기하는 바와 같이 일정 기간 동안 부채보유가 이루어지다가 은퇴를 앞 둔 시점부터 부채상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가구 유형별로 가구주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 가구주의 비중은 부채보유가

6) 2010년과 2011년의 2개 연도 자료를 사용하여 가계의 부채위험을 확정적으로 논의하는 것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자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2개년 자료를 사용하여 가계의 부채위험을 측정하는 연구는 유의미하다고 판단된다. 자료의 한계는 향후 가계금융조사가 계속 수행되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3〉 가구 유형별 특성

	위험경험				위험미경험				부채미보유	
	위험지표 4		위험지표 1		위험지표 4		위험지표 1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가구주 연령(세)	50.3	51.3	46.6	47.6	47.3	48.3	47.6	48.6	58.2	59.2
가구주 성별(남, %)	80.7	80.7	83.8	83.8	86.8	86.8	87.3	87.3	71.7	71.7
배우자 유무(있음, %)	78.1	78.2	80.5	80.2	81.0	81.2	81.0	81.3	61.3	61.1
가구원 수(명)	3.3	3.4	3.3	3.3	3.3	3.3	3.3	3.3	2.3	2.4
교육연수(연)	12.6	12.5	12.5	12.4	12.4	12.4	12.3	12.4	9.6	9.6
상용근로자(%)	17.7	16.4	35.2	36.2	44.3	44.0	45.3	44.7	25.5	25.1
임시·일용근로자(%)	12.3	9.4	12.5	11.1	13.4	13.4	13.6	13.7	15.1	15.1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6.8	13.1	11.9	10.6	7.8	7.7	7.2	7.3	3.0	2.7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34.6	41.6	27.9	28.9	23.8	23.8	23.2	23.4	17.6	17.0
기타(%)	18.5	19.5	12.6	13.2	10.7	11.1	10.6	10.9	38.8	40.1
총자산(만 원)	50,562	56,641	32,199	37,162	27,518	30,426	27,413	29,969	23,850	23,887
부동산 자산(만 원)	45,851	50,892	25,736	29,351	20,766	22,477	20,683	22,084	17,548	16,717
기타 자산(만 원)	753	1,108	1,005	1,301	897	1,110	864	1,064	499	614
금융자산(만 원)	3,959	4,640	5,458	6,510	5,855	6,839	5,866	6,820	5,803	6,557
총저축액(만 원)	2,679	3,614	3,834	4,961	4,090	4,995	4,089	4,942	4,371	5,059
임대보증금(만 원)	1,280	1,027	1,624	1,549	1,765	1,844	1,777	1,878	1,432	1,497
총부채(만 원)	21,698	26,564	9,317	11,868	5,432	6,239	5,220	5,788	1,049	978
금융부채(만 원)	18,994	23,407	7,642	9,966	3,963	4,664	3,745	4,220	0	0
임대보증금(만 원)	2,705	3,157	1,675	1,901	1,470	1,575	1,475	1,567	1,049	978
순자산(만 원)	28,863	30,077	22,883	25,295	22,085	24,187	22,193	24,181	22,801	22,909
경상소득(만 원)	3,833	2,763	3,983	3,994	4,242	4,625	4,286	4,694	2,711	2,868
가구 수	185		979		4,819		4,025		2,558	

구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남성 가구주 비율은 부채를 보유하지 않은 가구는 71.7%이며, 위험지표 4 기준 위험경험가구는 80.7%, 미경험가구는 86.8%, 위험지표 1 기준 위험경험가구는 83.8%, 미경험가구는 87.3%이다. 한편, 부채보유가구를 기준으로 남성 가구주 비중을 비교해 보면, 부채위험경험가구의 남성 가구주 비중이 낮고, 여성 가구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

는 여성 가구주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채위험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실제로 부채를 보유한 남성 가구주 가구 중 위험경험가구의 비중을 계산해 보면 위험지표 4 기준 3.5%, 위험지표 1 기준 18.9%인데 비해, 여성 가구주 가구 중 위험경험 가구의 비중은 위험지표 4 기준 5.3%, 위험지표 1 기준 23.7%이다.

교육연수를 살펴보면, 부채가 없는 가구의 가구주 교육연수가 9.6년으로 위험경험가구 및 위험미경험가구보다 낮았다. 이는 가구주의 평균연령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험경험가구와 미경험가구의 평균교육연수는 12.3~12.6년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배우자 유무와 가구원 수를 비교해 보면, 부채를 보유하지 않은 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비중이 낮았고, 가구원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채미보유가구의 가구주 평균연령이 높은 것과 연관된 것으로, 가구주 평균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사별 등으로 인해 배우자와 헤어진 경우가 늘어나고, 분가 등으로 인해 가구원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는 부채미보유가구 중 남성 가구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과도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즉, 여성의 평균연령이 높기 때문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가구주의 성별이 여성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가구주의 고용 상태를 살펴보면, 부채미보유가구의 경우 기타로 분류되는 경우와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중 기타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높은 평균연령을 고려할 때 은퇴한 경우를 상당수 포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부채보유가구의 고용 상태는 2010년과 2011년에 큰 차이가 없었다.

위험경험가구와 위험미경험가구를 비교해 보면, 어떤 위험지표를 사용하든 위험미경험가구의 상용근로자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위험경험가구의 경우 위험미경험가구보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의 비중이 높았다. 특히, 위험지표 4를 기준으로 볼 때 위험경험가구의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의 비중이 2010년 34.6%에서 2011년 41.6%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자영자의 경우 부채위험을 경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부채를 보유한 상용근로자 가구 중 위험경험가구 비중은 위험지표 4 기준 2.6%, 위험지표 1 기준 16.5%인데 비해, 부채를 보유한 고용원이 있는 자영자가구 중 위험경험가구의 비중은 위험지표 4 기준 6.1%, 위험지표 1 기준 26.0%이며, 부채를 보유한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가구 중 위험경험가구의 비중은

위험지표 4 기준 6.3%, 위험지표 1 기준 23.1%로 계산된다. 그리고 부채를 보유한 임시일용근로자가구 중 위험경험가구의 비중은 위험지표 4 기준 2.6%, 위험지표 1 기준 16.5%이며, 부채를 보유한 기타 가구 중 위험경험가구의 비중이 위험지표 4 기준 6.4%, 위험지표 1 기준 22.8%로 나타났다. 한편, 이상의 계산 결과에 따르면 고용 상태가 기타인 가구의 경우 부채를 보유할 경우 상대적으로 위험을 경험한 가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채미보유가구 중 고용 상태가 기타인 가구의 비중이 높았다. 고용 상태가 기타인 경우 은퇴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결과는 고령자의 부채 상태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즉, 고령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채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낮지만, 부채를 보유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부채위험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산 및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위험지표 4 기준 위험경험가구의 순자산 규모가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의 부동산 자산규모가 다른 가구의 2배 이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동산 자산의 규모가 큰 데 비해 총저축액의 규모는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위험경험가구의 경우, 2010~2011년 사이에 부동산 자산의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거의 비슷한 수준만큼 금융부채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⁷⁾ 이는 부동산 자산의 증가와 금융부채의 증가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높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경상소득을 살펴보면, 위험을 경험한 가구의 경우 위험미경험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험미경험가구의 경우 2010~2011년 사이에 경상소득이 증가하였으나, 위험경험가구의 경우 경상소득이 감소하거나(위험지표 4 기준), 거의 비슷한 수준(위험지표 1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통해 부채위험가구를 부채미위험가구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경상소득 수준이 낮고 총저축액이 낮지만, 부동산 자산규모가 크며 이 과정에서 금융부채가 급증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7) 위험지표 4 기준 위험가구의 경우, 2010~2011년 사이 금융부채 증가규모가 부동산 자산 증가액의 약 87.5%에 달한다. 이 비중이 위험지표 1 기준 위험가구는 64.3%이며, 위험지표 4 기준 위험미경험가구는 41.0%, 위험지표 1 기준 위험미경험가구는 33.9%이다.

2. 부채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여기서는 다항로짓(multinomial logit)모형 추정을 통해 부채위험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모형의 종속변수는 부채보유 경험이 없는 가구를 기준으로 부채위험경험가구, 부채위험을 경험하지 않은 가구 등 2개의 범주가 사용되었다. 설명변수로는 가계부채 관련 연구에 주로 사용된 변수들, 즉 가구주 연령, 연령제곱, 성별더미변수, 결혼 여부 더미변수, 가구원 수, 교육연수, 고용 상태 더미변수(상용근로자를 기준으로 임시 및 일용근로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기타 등이 사용됨) 주거더미변수(자가거주를 기준으로 전세, 보증금이 있는 월세, 보증금이 없는 월세, 기타 등이 사용됨), 대수(총저축액), 대수(부동산평가액), 대수(기타 자산평가액), 대수(경상소득), 총저축액의 변화 더미변수, 부동산평가액의 변화 더미변수, 기타 자산평가액의 변화 더미변수, 경상소득의 변화 더미변수 등이 사용되었다.

부채위험 경험에 대한 다항로짓 추정결과에 따르면(〈표 4〉 참조), 가구주 연령과 연령제곱은 모든 모형에서 각각 양의 값과 음의 값을 가지며 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이는 부채를 보유하지 않을 가능성과 비교할 때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초기에는 부채위험 경험 가능성과 부채위험을 경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일정 연령대가 지나면 부채위험 경험 가능성과 부채위험을 경험하지 않을 가능성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또한 계수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위험지표 4’를 기준으로 볼 때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부채위험을 경험하지 않을 가능성 대비 부채위험을 경험할 가능성이 일정 시기까지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위험지표 1’을 사용할 경우에는 부채위험을 경험할 가능성과 부채위험을 경험하지 못할 가능성 사이에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성별은 부채위험 경험가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부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주가 남성인 경우, 부채를 보유하지 않거나 부채위험을 경험하지 않을 가능성 대비 부채위험을 경험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배우자 유무는 위험지표 4 기준 위험경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위험지표 1 기준 위험경험에는 영향을 약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원 수는 위험경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가구지출 규모 등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구원 수가 많을 경우 미래 지출에 대비한 자산축적이 필요하며, 이때 부동산 중심의 자산축적과 함께 부채가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 부채위험 경험에 대한 다항로짓 추정결과

구분	위험지표 4				위험지표 1			
	부채위험 경험		부채위험 미경험		부채위험 경험		부채위험 미경험	
상수항	-5.582	1.540**	-3.204	0.494**	-1.985	0.681**	-3.793	0.497**
가구주 연령	0.214	0.058**	0.083	0.015**	0.087	0.023**	0.086	0.016**
가구주 연령제곱	-0.002	0.001**	-0.001	0.000**	-0.001	0.000**	-0.001	0.000**
성별(남성=1)	-0.707	0.293*	-0.154	0.096	-0.510	0.141**	-0.091	0.099
배우자 유무(유=1)	0.179	0.308	0.263	0.099**	0.558	0.149**	0.194	0.102
가구원 수	0.431	0.092**	0.225	0.032**	0.254	0.046**	0.227	0.033**
교육연수	0.160	0.027**	0.015	0.009	0.049	0.014**	0.014	0.009
고용(임시 및 일용근로자)	0.741	0.324*	-0.054	0.094	0.092	0.147	-0.075	0.096
고용(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2.037	0.290**	0.351	0.139*	1.133	0.170**	0.223	0.143
고용(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592	0.250**	0.407	0.089**	0.859	0.124**	0.338	0.090**
고용(기타)	0.551	0.330	-0.288	0.102**	0.079	0.160	-0.359	0.105**
주거(전세)	0.365	0.265	-0.016	0.114	0.157	0.154	-0.022	0.118
주거(보증금이 있는 월세)	0.457	0.411	0.284	0.131*	0.496	0.184**	0.257	0.136
주거(보증금이 없는 월세)	0.966	0.682	0.148	0.234	0.089	0.379	0.189	0.241
주거(기타)	0.963	0.404*	-0.080	0.159	0.355	0.220	-0.150	0.165
대수(총저축액)	-0.379	0.044**	-0.166	0.020**	-0.199	0.027**	-0.166	0.020**
대수(부동산평가액)	0.243	0.040**	0.023	0.012	0.070	0.017**	0.022	0.012
대수(기타 자산평가액)	0.059	0.040	0.045	0.012**	0.047	0.019*	0.047	0.012**
대수(경상소득)	-0.531	0.086**	0.325	0.057**	-0.078	0.065	0.359	0.054**
총저축액의 변화(증가=1)	-0.332	0.173	-0.131	0.060*	-0.237	0.088**	-0.116	0.062
부동산평가액의 변화 (증가=1)	0.451	0.183*	0.166	0.063**	0.339	0.092**	0.140	0.064*
기타 자산평가액의 변화 (증가=1)	0.221	0.172	0.133	0.060*	0.238	0.087**	0.116	0.061
상소득의 변화(증가=1)	-1.012	0.174**	0.233	0.059**	-0.158	0.085	0.269	0.061**
Log-Likelihood	-4,583.513				-6,312.896			

주: **, *는 각각 1%, 5%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고용 상태를 살펴보면, 고용원의 유무와 무관하게 자영업자는 유의한 양의 부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채위험을 경험하지 않은 가구에 비해 부채위험을 경험할 가능성에 대한 계수값이 크게 나왔다. 이는 자영업자의 경우 부채를 보유하지 않을 가능성에 비해 부채를 보유할 가능성이 많으며, 부채를 보유할 경우 부채위험을 경험하지 않을 가능성보다 부채위험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편, 임시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부채위험을 경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및 소득 관련 변수를 살펴보면, 총저축액은 부채위험을 경험할 가능성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동산평가액이 커질수록 부채위험을 경험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부동산평가액이 커지는 과정에서 담보대출 등의 방식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경상소득 증가는 부채를 보유하되 부채위험을 경험하지 않을 가능성을 높이지만, 부채위험을 경험할 가능성을 유의하게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2010~2011년 기간 중 총저축액이 증가한 가구는 부채위험을 경험할 가능성 및 부채를 보유하되 부채위험을 경험할 가능성이 모두 낮았다. 그리고 부동산평가액이 증가한 가구는 부채를 보유하지 않을 가능성에 비해 부채를 보유하되 부채위험을 경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부채를 보유하되 부채위험을 경험하지 않을 가능성보다는 부채위험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경상소득이 증가한 가구는 부채를 보유하지 않을 가능성보다 부채를 보유하되 부채위험을 경험하지 않을 가능성이 컸으며, 또한 부채를 보유하지 않을 가능성보다 부채위험을 경험할 가능성은 더 낮았다.

IV. 가구 유형별 부채상환능력 분석

본 절에서는 가구 유형별로 부채상환능력을 분석한다. 이때 부채상환능력지표를 통해 측정된 가구의 부채상환능력뿐만 아니라, 가구가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자신의 부채상환능력을 동시에 분석한다. 그리고 주관적인 부채상환능력과 지표를 통해 파악되는 가구의 부채상환능력 간의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제시한다.

1. 상환능력지표 분석

〈표 5〉는 부채위험경험 유형별 부채상환능력을 비교한 결과이다. 이자 및 원리금 기준과 소득 대비 금융부채의 비중(DTI) 기준으로 볼 때 부채위험경험가구의 부채상환능력은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지표 4를 기준으로 볼 때, 부채위험경험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이자 및 원리금 상환액의 비중은 2010년 35.0%에서 2011년 119.0%로, 경상소득 대비 금융부채의 비중은 495.5%에서 847.3%로 악화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위험지표 1을 기준으로 보아도 거의 동일하였다. 총저축액 대비 금융부채의 비중(DTA) 기준으로 보면, 위험지표 4 기준 부채위험경험가구의 부채상환능력은 709.1%에서 647.8%로 개선되었으며, 위험지표 1 기준 부채위험경험가구의 부채상환능력은 199.3%에서 200.9%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DTA 기준으로 측정한 부채상환능력이 다소 개선되거나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금융부채 규모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저축액이 일정 정도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적자가구의 비중은 위험지표 4 기준 부채위험경험가구의 경우 2010년 67.2%에서 2011년 94.2%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위험지표 1 기준 부채위험경험가구에서도 2010년 42.3%에서 2011년 48.2%로 증가하였다.

부채위험을 경험하지 않은 가구의 경우 경상소득 대비 이자 및 원리금 상환액의 비중으로 측정한 부채상환능력이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2010년에서 2011년 사이 부채상환능력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위험을 경험하지 않은 가구 중 적자가구의 비중 역시 2010년과 2011년 사이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지표 4 기준 부채위험을 경험하

〈표 5〉 부채위험 경험 유형별 부채상환능력

(단위: %)

구분	위험경험				위험미경험			
	위험지표 4		위험지표 1		위험지표 4		위험지표 1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이자·원리금 기준	35.0	119.0	36.4	69.4	9.8	17.4	4.9	9.4
DTI 기준	495.5	847.3	191.9	249.5	93.4	100.8	87.4	89.9
DTA 기준	709.1	647.8	199.3	200.9	96.9	93.4	91.6	85.4
적자가구 비중	67.2	94.2	42.3	48.2	29.9	31.6	28.6	30.4

지 않은 가구의 경우 2010년 29.9%에서 2011년 31.6%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위험지표 1 기준 부채위험을 경험하지 않은 가구도 2010년 28.6%에서 2011년 30.4%로 소폭 증가하였다.

2. 가구의 주관적 부채상환능력 분석

「가계금융조사」에는 가구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부채상환능력을 측정하는 아래와 같은 설문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는 이 설문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를 토대로 가구가 판단하고 있는 주관적인 부채상환능력에 대해 분석한다.

귀 닥은 언제까지 가계부채를 상환할 수 있습니까?

- ① 대출기한 내에 갚을 수 있다.
- ② 대출기한은 경과하더라도 _____년까지는 갚을 수 있다.
- ③ 상환불가능할 것이다.

〈표 6〉에 따르면, 부채위험가구의 경우 대출기한 내 상환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고, 대출기한이 지나서야 상환이 가능하거나,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부채상환능력지표 기준 부채위험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기한 내 대출상환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기한 내 상환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을 살펴보면, 위험지표 4 기준 부채위험가구의 경우 2010년 40.8%, 2011년 37.7%, 위험지표 1 기준 부채위험가구의 경우 2010년 59.5%, 2011년 53.9%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위험지표 4 기준 위험 미경험가구의 66.9~63.1%와 위험지표 1 기준 위험미경험가구의 67.5~64.3%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부채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을 살펴보면, 위험지표 4 기준 부채위험가구의 경우 2010년 17.2%, 2011년 24.6%, 위험지표 1 기준 부채위험가구의 경우 2010년 9.1%, 2011년 11.0%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위험지표 4 기준 위험미경험가구의 6.2~6.1%와 위험지표 1 기준 위험미경험가구의 6.0~5.8%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또한 연도별로 위험가구의 경우 대출기한 내에 상환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은 감소하고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위험가구도 대출기한 내 상환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가구

〈표 6〉 가구가 판단하는 주관적 부채상환능력

구 분		부채위험가구				부채미위험가구			
		지표 4		지표 1		지표 4		지표 1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가구 수	미응답	28	2	201	53	1,299	715	1,126	664
	대출기한 내 상환가능	66	69	463	499	2,354	2,590	1,957	2,160
	대출기한을 지나 상환가능	64	69	244	325	947	1,263	767	1,007
	상환불가능	27	45	71	102	219	251	175	194
	응답가구	157	183	778	926	3,520	4,104	2,899	3,361
비중	대출기한 내 상환가능	42.0	37.7	59.5	53.9	66.9	63.1	67.5	64.3
	대출기한을 지나 상환가능	40.8	37.7	31.4	35.1	26.9	30.8	26.5	30.0
	상환불가능	17.2	24.6	9.1	11.0	6.2	6.1	6.0	5.8

주: 가구의 비중은 응답가구 대비 비중임.

의 비중이 감소하고 대출기한이 지나서 상환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2011년 기간 중 가구의 부채상환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가 다소 비관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위험가구의 경우 상환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주관적인 부채상환 가능성을 더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 주관적 부채상환능력과 부채위험

(1) 추정 모형

〈표 6〉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위험가구에 속한 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대출기한 내 상환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 즉, 위험지표로 측정한 위험 정도와 가계가 주관적으로 판단한 부채상환 가능성 간에 일정 정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상의 결과는 가계의 특성, 고용 상태, 자산 및 소득수준 등을 충분히 통제하지 않은 결과이다. 또한 위험지표 4 기준 위험가구 중 약 40% 내외의 가구가 상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다.

이에 여기서는 가구특성 및 경제 상태를 고려한 상황에서 주관적인 부채상환 능력과 위험지표를 통해 측정한 부채위험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모형

의 종속변수로는 2011년 기준 가계의 주관적인 부채상환 가능성 여부가 사용되었으며, 종속변수의 값은 가계의 대출기한 내 갚을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의 값을, 그 외의 경우는 0의 값을 갖는 것으로 하였다. 대출기한이 지난 후 상환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경우도 0의 값을 준 것은, 대출기한을 넘어선다는 것 자체가 일정 정도 부채위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응답하지 않은 경우 역시 주관적으로 판단할 때 부채상환에 대한 자신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0의 값을 부여하였다.

모형의 설명변수로는 가구주 연령, 연령제곱, 성별더미변수, 결혼 여부 더미변수, 가구원 수, 교육연수, 고용 상태 더미변수(상용근로자를 기준으로 임시 및 일용근로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기타 등이 사용됨), 주거더미변수(자가거주를 기준으로 전세, 보증금이 있는 월세, 보증금이 없는 월세, 기타 등이 사용됨), 대수(총저축액), 대수(부동산평가액), 대수(기타 자산평가액), 대수(경상소득), 총저축액의 변화 더미변수, 부동산평가액의 변화 더미변수, 기타 자산평가액의 변화 더미변수, 경상소득의 변화 더미변수 등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위험지표로 측정된 부채위험 정도와 주관적 부채상환능력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변수로 부채위험 더미변수와 2011년 부채위험 경험 간의 상호작용 변수가 사용되었다. 부채위험 더미변수와 2011년 기준 부채위험 경험 간의 상호작용 변수를 사용한 것은, 부채위험가구의 경우 2010년과 2011년 중 한 번이라도 부채위험을 경험한 가구를 의미하기 때문에 실제로 2011년에는 부채위험 상태가 아닌 경우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한편, 주관적인 부채상환능력에 대한 응답은 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경우에만 의미가 있다. 따라서 부채를 경험한 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전체 표본 중 일부만을 사용함에 따라 표본편의(sample selection)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여기서는 표본편의를 고려한 프로빗 모형 추정(probit regression with sample selection)을 실시한다. 이를 위한 1단계 추정에서는 부채 보유 여부가 종속변수(부채보유=1, 부채미보유=0)로 사용되었으며, 설명변수로는 가구주 연령, 연령제곱, 성별 더미변수, 결혼 여부 더미변수, 가구원 수, 교육연수, 고용 상태 더미변수(상용근로자를 기준으로 임시 및 일용근로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기타 등이 사용됨) 주거더미변수(자가거주를 기준으로 전세, 보증금이 있는 월세, 보증금이 없는 월세, 기타 등이 사용됨), 대수(총저축액), 대수(부동산평가액), 대수(기타 자산평가액), 대수(경상소득) 등이 사용되었다.

(2) 1단계: 부채보유 여부에 대한 추정결과

표본편의 프로빗 모형의 1단계 부채보유 여부에 대한 추정결과에 따르면(〈표 7〉 참조), 가구주 연령과 연령제곱은 각각 양의 값과 음의 값을 가지며 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이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초기에는 부채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일정 연령대가 지나면 부채를 경험할 가능성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성별은 유의한 음의 부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 가구주의 경우 부채를 경험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여부와 가구원 수와 교육연수는 모두 유의한 양의 부호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어 결혼한 가구일수록,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채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상태를 살펴보면, 고용원의 유무와 무관하게 자영업자 더미변수는 유의한 양의 부호를 가져 부채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타의 경우에는 유의한 음의 부호를 가져 부채를 경험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전술한 부채위험에 관한 다항로짓 분석결과와 비교해 보면, 자영업자의 경우 부채를 경험할 가능성도 높고 부채위험을 경험할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다. 기타 가구는 부채를 경험할 가능성은 낮지만, 부채를 보유할 경우 부채위험을 경험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다. 기타 가구가 고령 가구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분석결과는 고령자 가구가 상대적으로 부채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낮지만, 부채를 보유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부채위험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산 및 소득 관련 변수를 살펴보면, 총저축액은 부채보유 가능성을 떨어뜨리지만, 부동산평가액이 커질수록 부채를 경험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상소득의 증가는 부채보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앞서 부채위험에 관한 다항로짓 추정결과와 비교해 보면, 총저축액이 클수록 부채보유 및 부채위험 가능성이 낮으며, 부동산평가액이 커질수록 부채 및 부채위험 경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경상소득이 증가할 경우 부채보유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부채위험을 경험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2단계: 주관적 부채상환능력에 대한 추정결과

전술하였듯이 2단계 추정의 종속변수는 2011년 기준 가계의 주관적인 부채상환 가능성 여부로서 가계가 대출기한 내에 부채를 갚을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를 1, 그 외의 경우는 0으로 처리하였다. 2단계 주관적 부채상환능력에 대한 추정은 위험경험을 나타내는 변수에 따라 모형 1과 모형 2로 구분된다. 모형 1은 위험지표 1을 기준으로 위험경험 관련 변수가 사용된 경우이며, 모형 2는 위험지표 4를 기준으로 위험경험 관련 변수가 사용된 경우이다. 그리고 주요 변수들의 추정결과는 모형 1과 모형 2에서 거의 동일하였다.

추정결과를 논의해 본다(〈표 7〉 참조). 우선 가구주의 연령은 유의한 음의 부호를 가지고, 연령제곱은 유의한 양의 변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주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주관적인 부채상환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점증적으로 증가함(increasing with increasing rate)을 의미한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고 가구의 자산축적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대출기한 내 상환 가능성에 대해 높게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가구원 수는 유의한 음의 부호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어 가구원 수의 증가가 가계의 지출규모를 증가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녀의 수가 많을 경우 교육비 지출, 결혼관련 비용 등 지출이 증가하므로 자연스럽게 대출기한 내 상환 가능성이 낮아진다. 고용원의 유무와 무관하게 자영업자 더미변수는 유의한 음의 부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경우 임금근로자에 비해 대출기한 내 상환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계수값을 비교해 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에 비해 기한 내 상환 가능성을 더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및 소득관련 변수를 살펴보면, 대수(총저축액) 및 총저축액의 변화는 기한 내 상환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높게 만드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부동산평가액의 규모나 변화는 상환기간 내 가능성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많은 가구가 부동산 구입을 통해 자산을 축적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채의 상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리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위험지표로 평가된 위험경험과 주관적 부채상환능력 간의 관계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변수의 유의성을 평가해 보면, 모형 1의 위험경험 더미변수만 유의한 음의 부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위험지표 1을 기준으로 볼 때 부채위험을 경험한 가구는 대출기한 내 상환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표 7〉 표본편의 프로빗 모형 추정결과

	1단계 추정		2단계 추정			
			모형 1		모형 2	
	계수값	표준오차	계수값	표준오차	계수값	표준오차
상수항	-1.206	0.255**	1.898	0.845*	1.845	0.817*
가구주 연령	0.050	0.009**	-0.085	0.018**	-0.082	0.017**
가구주 연령제곱	-0.001	0.000**	0.001	0.000**	0.001	0.000**
성별(남성=1)	-0.115	0.056*	0.080	0.077	0.080	0.077
결혼 여부(기혼=1)	0.207	0.056**	0.035	0.106	0.032	0.103
가구원 수	0.109	0.017**	-0.091	0.025**	-0.087	0.025**
교육연수	0.014	0.005**	-0.001	0.008	0.000	0.008
고용(임시 및 일용근로자)	-0.064	0.053	-0.031	0.071	-0.025	0.071
고용(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0.317	0.069**	-0.408	0.081**	-0.412	0.080**
고용(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0.250	0.047**	-0.171	0.076*	-0.165	0.075*
고용(기타)	-0.268	0.057**	-0.131	0.143	-0.131	0.136
주거(전세)	-0.161	0.053**	-0.031	0.083	-0.032	0.082
주거(보증금이 있는 월세)	-0.062	0.063	-0.109	0.081	-0.115	0.081
주거(보증금이 없는 월세)	-0.120	0.130	-0.330	0.198	-0.324	0.196
주거(기타)	-0.288	0.076**	-0.061	0.144	-0.065	0.140
대수(총저축액)	-0.094	0.010**	0.106	0.020**	0.104	0.020**
대수(부동산평가액)	0.015	0.005**	0.004	0.008	0.006	0.008
대수(기타 자산평가액)	0.013	0.007	0.008	0.010	0.009	0.010
대수(경상소득)	0.094	0.025**	0.008	0.048	-0.001	0.047
총저축액의 변화(증가=1)	-	-	0.176	0.045**	0.177	0.045**
부동산평가액의 변화(증가=1)	-	-	-0.042	0.043	-0.046	0.043
기타 자산평가액의 변화(증가=1)	-	-	0.065	0.040	0.063	0.040
경상소득의 변화(증가=1)	-	-	0.071	0.042	0.069	0.042
위험경험*2011년 위험(지표 1 기준)	-	-	0.169	0.099	-	-
위험경험(지표 1 기준)	-	-	-0.413	0.134**	-	-
위험경험*2011년 위험(지표 4 기준)	-	-	-	-	0.086	0.282
위험경험(지표 4 기준)	-	-	-	-	-0.573	0.337
/athrho	-0.401	0.599				
rho	-0.381	0.512				
Log-Likelihood				-7,119.758		-7,118.730

주: **, *는 각각 1%, 5%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형 2의 위험경험 더미변수는 음의 값을 가지나 유의하지 않았다. 즉, 위험지표 4를 기준으로 볼 때 부채위험을 경험한 가구가 기한 내 상환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기 어려

왔다. 또한 위험경험 더미변수와 2011년 위험경험 간의 상호작용 변수 역시 유의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는 부채위험 지표 4를 기준으로 볼 때, 가구의 특성이나 자산 및 소득 관련 변수를 통제할 경우 위험지표로 평가되는 위험경험과 큰 상관없이 부채상환능력에 대한 가구의 주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금융부채 보유 상태 및 부채상환능력을 기준으로 가구를 부채미보유가구, 부채위험경험가구, 부채위험미경험가구 등으로 구분한 후 각 유형별로 가구특성, 부채특성, 그리고 부채상환능력을 비교·분석하였다. 특히, 가구의 주관적인 부채상환 가능성과 객관적인 지표로 파악되는 가구의 부채상환능력의 비교를 통해 부채위험에 대한 각 가구의 주관적인 평가가 얼마나 정확한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구 유형별 특징을 비교해 보면, 가구주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채를 보유할 가능성은 낮아지지만, 부채를 보유할 경우 부채위험을 경험할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가구주 성별을 분석해 보면, 여성 가구주가 부채를 보유할 가능성 및 부채위험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구주의 고용 상태를 살펴보면, 고용원 유무와 무관하게 자영업자 가구의 부채보유 및 부채위험 경험 가능성이 높았다. 자산 및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부동산 자산이 많을수록 부채보유 및 부채위험 경험 가능성이 높은 반면, 총저축액은 부채보유 가능성 및 부채위험 경험 가능성을 낮추고 있었다. 경상소득이 높을수록 부채보유 가능성은 높아지나 부채위험에 빠질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구 유형별 부채상환능력을 분석해 보면, 우선 부채상환능력지표를 이용하여 부채상환능력을 비교해 보면, 이자 및 원리금 기준과 소득 대비 금융부채의 비중(DTI) 기준으로 볼 때 부채위험경험가구의 부채상환능력은 2010~2011년 기간 중 크게 악화되었다. 반면 부채위험을 경험하지 못한 가구의 경우, 경상소득 대비 이자 및 원리금 상환액의 비중으로 측정된 부채상환능력이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볼 때 2010년에서 2011년 사이 부채상환능력에 큰 변화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가구의 주관적인 부채상환능력 평가결

과에 따르면, 부채상환능력지표 기준 부채위험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기한 내 대출상환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0~2011년 기간 중 부채상환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의 변화를 살펴보면, 모든 가구에서 가구의 부채상환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가 다소 비관적으로 변하였다. 특히, 위험가구의 경우 상환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주관적인 부채상환 가능성에 대해 더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가구특성 및 경제 상태를 고려한 상황에서 주관적인 부채상환능력 위험지표를 통해 측정된 부채위험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대출기한 내 상환 가능성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자영업자일수록 대출기한 내 상환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수(총저축액)가 많거나 증가한 경우 대출기한 내 상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나, 부동산평가액의 규모나 변화는 상환 내 가능성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위험지표로 평가된 위험경험과 주관적 부채상환능력 간의 관계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변수의 유의성을 평가해 보면, ‘이자 및 원리금상환액 기준’만을 사용하여 부채위험을 정의할 경우에는 부채위험 경험이 대출기한 내 상환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게 만들지만, 이자 및 원리금 상환액 기준, DTA 기준, DTI 기준, 적자가구 기준 등을 모두 사용하여 위험경험을 측정할 경우 위험경험이 주관적인 부채상환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부채의 취약계층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고령자의 경우 부채를 보유할 가능성은 낮지만, 부채를 보유할 경우 부채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고, 여성 가구주와 자영업자의 경우 부채보유 가능성과 부채위험 경험 가능성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가구를 대상으로 한 자산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자영업은 경기 상황이 악화되고 임금근로자의 실업이 증가하면서 비자발적으로 밀려난 측면이 강하며, 이들의 경우 대체로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영세 사업체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김기승, 2006; 서재만, 2011). 이들의 경우 자영업을 시작하면서 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대출은 대부분이 상환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영업을 시작하면서

사업자금 때문에 이루어지는 대출에 대한 일정 정도 제한⁸⁾ 및 임금근로자들의 자영업 진입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노동시장정책, 일시적인 실업에 대한 소득지원정책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가계의 부채보유 및 부채위험은 부동산 자산의 증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의 입장에서 본다면 생애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서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집중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부동산 자산의 비중증가 및 부동산 자산취득 과정에서 증가한 부채는 부동산 자산 가격 하락에 취약하다는 약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비이성적으로 오르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다만,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각종 대출 규제의 완화는 부동산 자산에 대한 수요 증가 및 가격인상 요인으로 작용하여 관련 대출을 증가시켜 부채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셋째, 주요 부채상환능력지표를 통해 살펴본 부채위험가구의 부채상환능력은 2010~2011년 기간 중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가계의 부채상환 시점이 도래할 경우 경제에 큰 충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계의 부채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정책과 함께 현재 존재하는 부채위험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 금융기관과 개별 가구 간의 상담 등을 통해 부채만기 조정, 부채이자율 조정 등을 포함한 부채위험가구의 부채상환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필요시 이에 대한 정책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위험지표 4를 기준으로 볼 때 가구의 부채위험과 주관적 부채상환능력 평가 간에 별다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채위험가구가 자신의 부채상환능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채위험가구가 자신의 상환능력과 무관하게 부채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부채위험가구가 자신의 부채상환능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지원하는 가계의 부채상태 분석지원 프로그램, 금융교육 프로그램 등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8) 서재만(2011)에서는 소상공인의 진입을 유도하거나 자영업 영위를 지속하게 하기 위한 금융지원정책은 신성장산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참 고 문 헌

- 강석훈, “우리나라 가구의 금융자산 보유 실태 종합분석,” 『가구소비실태조사 종합분석사업보고서』 5-1, 통계청, 1998.
- 김건우·이창선, “가계부실지수로 본 가계부채,” LGERI 리포트, 2012. 3. 7.
- 김기승, 『자영업 진출 결정요인과 정책시사점』, 경제현안분석 제8호, 국회예산정책처, 2006.
- 김우영·김현정, “가계부채의 결정요인 분석,” 『국제경제연구』 제16권 제1호, 2010, 39~78.
- 김정호, “가계부채규모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제19집 제2호, 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4, 1~16.
- 김진영, “대우패널 자료를 통해 본 1990년대 가계의 자산구성 변화,” 『재정논집』 제17집 제1호, 한국재정학회, 2002, 47~74.
- 김진영·박창균, 『가계의 자산구성 변화와 조세정책에 대한 함의』, 연구보고서 01-08, 한국조세연구원, 2001.
- 김학주, “가구주의 취업형태에 따른 가계의 부채부담 연구,” 『사회복지정책』 20, 2004, 109~131.
- _____, “소득계층별 가계의 부채부담 연구,” 『사회보장연구』 제21권 제1호, 한국사회보장학회, 2005, 119~147.
- 김현정·김우영·김기호,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한 가계부채 분석,” 『금융경제연구』 제366호, 한국은행, 2009. 2. 25.
- 남상호, “우리나라 가구의 자산분포 현황과 시사점,” 『2007 경제학공동학술대회 재정학회 분과 발표자료』, 2007.
- 남상호·권순현, “우리나라 가구의 자산분포 분석: 가계자산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07.
- 문숙재·정순희·여윤경, “가계순자산 규모의 결정요인,” 『소비자학 연구』 제13권 제3호, 한국소비자학회, 2002, 169~188.
- 박주영·최현자, “자산계층별 가계 포트폴리오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7권 제4호, 1999, 한국가정관리학회, 193~206.
- 서재만, 『자영업자 현황 및 정책방향』, 경제현안분석 제65호, 국회예산정책처, 2011.

- 성영애, “패널자료를 이용한 가계부채변동 관련 요인 분석,” 『소비자학 연구』 제17권 제4호, 한국소비자학회, 2006, 39~60.
- _____, “가계부채의 용도별 보유현황 및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제21권 제3호, 2010, 29~52.
- 성영애·양세정, “가계의 부채부담과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3권 제1호, 한국가정관리학회, 1995, 207~219.
- 신동진, 『가계부채의 문제점과 정책개선방안—출구전략 시행을 중심으로—』, 경제현안분석 제55호, 국회예산정책처, 2010. 7.
- 신창목, “가계부채 부실화 위험 진단 및 소비에 미치는 영향 분석,” SERI 경제포커스 제286호, 삼성경제연구소, 2010. 3. 30.
- 양세정, “맞벌이 가구의 부채보유행태에 관한 분석,” 『사회과학연구』 제13호, 상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0, 1~18.
- 양세정·이영호, “가계저축규모의 결정요인,” 『대한가정학회지』 제34권 제2호, 대한가정학회, 1996, 201~215.
- 여윤경·주소현, “가계의 순자산과 자산배분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제22권 제5호, 2009, 2109~2129.
- 이규복, “가계부채 내 자영업자 현황 및 향후 정책방향”, 주간금융브리프(2012. 5. 12~5. 18) 제21권 제20호, 금융연구원, 2012.
- 이재기,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현황”, 한은금융강좌 발표자료, 2012. 3. 2.
- 전승훈·임병인, “2000년 이후 가계의 자산 및 부채보유 실태의 변화분석,” 『재정학연구』 제1권 제2호, 2008, 133~162.
- _____, “금융위기 전·후 가계부채 보유실태 및 부채위험 분석,” 『재정정책논집』 제14권 제2호, 2012, 67~102.
- 최공필, “현 가계부채문제 진단과 Covered Bond 활용전략,” 『주간금융브리프』 (2012. 3. 17~3. 23) 제21권 제12호, 금융연구원, 2012.
- 홍종학, “가계부채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과제,” 『응용경제』 제13권 제2호, 한국응용경제학회, 2011. 9, 169~190.

[Abstract]

An Analysis on Repayment Capability of Financial Debt by Household Types

Seung-Hoon Jeon* · Byung-In Lim**

Our study divides households into three types, which are a no-debt-household, a household experienced an outstanding debt, and a household which has not faced on debt risk at all, using the Survey of Household Finances during 2010~2011. Major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old-aged household, the female household head, and the self-employed household are not very likely to pay their debts back. Second, the incapability to repay debt has something to do with the increase in the real estate. Third, empirical results from analyses on their ability to pay the debt back says that their capability, calculated by a risk index, has been worsened during 2010~2011, and furthermore, they take a dim view of solvency in a questionnaire. Lastly, estimations from a probit regression with sample selection for a relationship between a debt risk and a subjective evaluation whether they can afford debts implies that households, facing a situation not to pay debt back, has but a poor grip of the status quo in debt and then are more likely to fall into a debt increase in the near future.

Keywords: household debt, debt hazard, repayment capability, survey of household finances, dept type

JEL Classification: D1, E2, R2

* First Author,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Daegu University, Tel: +82-53-850-6214, E-mail: jsh1105@daegu.ac.kr

** Corresponding Author,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el: +82-43-261-2216, E-mail: billforest@hanmail.net